국민권익위원회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행정처분서상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등 안내 문구 기재 협조요청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'18. 11. 1.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**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적극 안내**함으로써 행정심판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**행정처분의 불복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**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처분 불복절차 고지 및 국선대리인 안내 기재례]

√ ○○○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○○○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)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√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<협조 요청사항>

○ 행정처분서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안내 문구 등 명기

※ 안내문 문구는 해당 처분청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가능하며, 산하 기관 등의 처분청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현재 국선대리인 제도 미운영 기관에서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명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귀 기관의 행정심판 담당부서는 행정처분을 행하는 소관 실·과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해 상기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본 공문을 재시행(재배포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국선대리인 안내문 1부. 끝.

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부서, 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심위원회 피청구기관

주무관	**남궁연심**	행정심판총괄 전결 2024. 11. 25. 과장 **손인순**	
협조자			
시행 행정심판총괄과-11142 (2024. 11. 26.)		접수 행정심판담당관-8128 (2024. 11. 26.)	
우 30102	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(어진동) 1		/ http://www.acrc.go.kr
전화번호 044-200-7810	팩스번호 044-200-7951	/ uri0229@acrc.go.kr	/ 대국민 공개
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. 내 삶이 달라집니다.